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02
----------	-----

제출연월일 : 2008. 10. 27.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사업의 설치근거를 법에 맞게 변경함(안 제1조).
- 나. 사업의 범위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은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기타 중복 조문 및 문구를 간결·명료하게 정비함(안 제4조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8. 9. 26 ~ 10. 16.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제2조의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

**제4조(조직 및 인사의 건의)** 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전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5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

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재정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및 부담은 무상으로 한다.

**제9조(출자)** ① 대전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예산과목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
2. 자금운용보고서
3. 예산집행 보고서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4조 (독립채산) ①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출자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통할)**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8조 (변상책임)** ①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 가. 궤도사업(생략)

- 나. 하수도사업(생략)

-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생략)

- 라. 의료사업(생략)

-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